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0
------------	------

발의연월일 : 2017. 1. 19.

발 의 자 : 신경민 · 소병훈 · 송영길

박 정 · 인재근 · 박남춘

박재호 · 김상희 · 박주민

김성수 · 김정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소비자연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자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도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협정을 맺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을 “제3항·제5항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항을”을 “제3항·제5항을”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을 각각 “제3항·제5항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3항을”을 “제3항·제5항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

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
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8. (생 략)

③ • ④ (생략)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

제15조(과징금) ① -----

	<p><u>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u> <u>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자</u></p>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